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만대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레저인구 증가로 해마다 자전거 이용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을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시속 20km이상의 고속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충돌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높아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만 가볍게 생각하여 음주를 한 상태에서도 위험하다는 주의의식 없이 타고 다녔으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그로인한 손상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자전거를 포함시켜 2018년9월28일부터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운행을 지양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전거이용자는 스스로 음주운행을 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